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박상혁 · 이연희 · 이해식
이기현 · 한민수 · 조정식
김주영 · 남인순 · 한준호
이강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,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그런데,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,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,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0조의2 신설).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임원의 해임 등) ① 임명권자는 임원(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사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2.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3.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임원의 해임 등) ① 임명권자는 임원(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사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/u> <u>1.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</u> <u>2.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</u> <u>3.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<u>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</u> <u>③ 이사회는 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</u>

<u>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u>
